강원관광대학 편입학 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18조(편입학)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편입학 시기) 편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의 1/4일 이내로 한다.
- 제 3 조 (편입학 허가) 매 학기초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.
- 제 4 조 (편입학 자격) 제 1학년 이상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직전학년 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.
- 제 5 조 (구비 서류) ①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(서식 1)와 전형료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졸업, 졸업예정, 수료, 재학 증명서 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편입학 전형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 - ②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 6 조(학점 인정) ① 제 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자는 20학점 이상 39학점까지, 제 2 학년 1학기에 편입학 할 자는 40학점 이사 59학점까지 인정된 자로서 편입학 할 수 있다.
 - ②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 학년의 이전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수 과목을 권장할 수 있다.
 - ③ 편입학생의 성적 사정은 해당계열(과)에서 계열(과) 회의를 거쳐 성적 인정 가능한 과목을 선정한다.
 - ④ 교무회의를 거쳐 학과에서 선정한 학점을 가결한다.
 - ⑤ 편입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편입생 인정학기 및 학점과 이 대학에서 이수한 총학기 수 및 학점이 최소한 4학기(80학점)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 7 조 (학력조회) ① 편입학한 자의 전적 대학(교)에 학력 및 성적을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 - ② 조회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